

발 간 등 록 번 호

33-9750040-000421-01

비교헌법연구

2023-B-3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연구책임자 : 한 동 훈 책임연구관(비교헌법연구팀)

목 차

I. 서론 / 1

-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구성 4

II.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 6

-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6
 - 가. 법률안의 제정배경 및 입법이유 6
 - 1) 법률안의 제정배경 6
 - 2) 법률안의 입법이유 7
 - 나.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9
 - 1) 제1조 9
 - 2) 제2조 11
 - 3) 제3조 12
 - 4) 제4조 13
 - 5) 제5조 14
 - 6) 제6조 14
 - 7) 제7조 15
- 2. 법률안에 대한 하원 및 상원에서의 토의 15
 - 가. 하원 제1독회에서의 토의 17
 - 1) 법률안에 대한 국사원의 의견제출 17
 - 2) 기타 하원 제1독회에서의 수정 사항 19
 - 3)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의 의견발표 19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및 상원 제1독회에서 토의	20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21
2) 상원 제1독회에서 논의	24
다. 상원 제1독회 이후의 의회 내 토의	25
3. 최종적으로 가결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내용	26
가. 의의	26
나.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1시간 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	28
다. 명백한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	31
라. 인터넷상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의무	36
마. 인터넷상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새로운 권한 부여	36
바. 봉쇄 또는 링크삭제 결정을 받은 사이트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	38

III.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후의 법적 상황 / 40

1.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40
가.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하여	41
1) 심판대상법률규정	41
2) 제소이유	42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42
나.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에 대하여	44
1) 심판대상법률규정	44
2) 제소이유	45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46
다. 기타 심판대상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대하여	48

2.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2020년 6월 18일 결정’에 대한 평가 .. 49	
가.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의 의의	49
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의견	50
1)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하여	51
2)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와 관련하여	51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 이후의 법적 상황	53
가. 의의	53
나. 인터넷상의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	53
다. 인터넷상의 혐오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	54
1) 적용대상 사업자	55
2)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56
3) 규제대상인 불법적 콘텐츠	57

IV.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의 비교검토 / 60

1.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에 대한 검토	60
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	61
1) 유통방지의무의 주체	63
가) 부가통신사업자	63
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64
2)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	64
가) 유통방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	64
나)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의무	66
3) 기타 의무	67
4) 유통방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8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	69
1) 의무의 주체	70

2)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71
가) 불법촬영물의 범위	71
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71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2
2.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의 비교검토	73
가. 불법정보의 범위	73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 ..	73
2)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	74
나.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74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74
2) 국내의 법률	74
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75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75
2) 국내의 법률	75
라. 소결	76

V. 맺음말 / 78

■ 참고문헌	81
--------------	----

초 록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죄에 대하여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여된 24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인터넷상 혐오표현, 인터넷상 불법정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불가결한 요소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적 요소라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정보의 자유), 매스미디어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의사표현의 방향이나 내용, 가치성은 문제삼지 않으며, 의사표현의 방법도 묻지 않는다.¹⁾

그런데 의사표현 매체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은 전통적인 언론기관인 신문이나 방송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인터넷은 i)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적 매체라는 점, ii)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정보통제자가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탈중심적이며, 개방적 매체라는 점, iii) 기존의 매스 미디어의 경우 정보소비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에 그치지만, 인터넷의 경우 기존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었다는 점, iv) 기존의 매스 미디어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인터넷의 경우 다양한 경로 및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²⁾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징은 대중을 수동적 정보 수신자에서 능동적인 발신자로 전환시키며, 이를 통해 대중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인간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보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이나 음란물 등 불량정보까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³⁾

1) 김하열, 헌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3, 453-460면.

2)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31-41면.

3)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 혐오표현 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법 제51권, 2020, 10-11면.

이 가운데 혐오표현(hate speech)⁴⁾은 구체적인 범위설정에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혐오표현이 영속성, 순회성, 익명성, 횡단적 관할의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혐오표현이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더라도 인터넷의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연결성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그 혐오표현의 메시지가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⁵⁾

-
- 4) 혐오표현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준일 교수는 “특정 대상에 대한 내면의 혐오감을 외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행위(또는 표현물)”이라고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제72호, 2014, 66면), 이상경 교수는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동성애, 성적 지향성 등을 근거로 하여, 선동적(inflammatory)이며, 모욕적(insulting)이고, 조롱하며(derisive), 위협하는(threatening) 등의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5, 214면), 조소영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hate speech’는 그 표현에 집단성(다수성)·차별성·적의성을 개념적 공통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라기 보다는 ‘적의적(敵意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하면서, 규제대상으로서의 적의적 표현의 개념적 요소로서 i) 해당 표현의 대상의 집단성(다수성), ii) 표현의 핵심으로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의 표현, iii) 해당 표현의 목적이 표적집단이 된 대상자들의 존엄을 침해할 목적이거나 위협적·적대적·모욕적·굴욕적·공격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iv) 발언의 배경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45권 제1호, 2016, 243-244). 한편, 이승선 교수는 “지역·민족·인종·국적·종교·장애·성별·성정체성·연령 등 일정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모멸·혐오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선동·선전하는 것”라고 하면서 혐오표현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난 ‘지역과 국적, 민족, 성별’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면서(이승선,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8, 115면),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혐오표현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이승선,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8, 124면). 따라서 혐오표현의 개념과 관련된 국내학자들의 입장은 혐오표현의 개념적 요소로서, ①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특정 대상과 이들의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 ② 모욕, 비방, 위협, 욕설 등의 표현행위, ③ 혐오표현 행위자의 적대적 의도성이나 목적성, ④ 언어 행위, 문서, 영상, 온라인 미디어 등의 혐오표현의 매개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내학자들의 입장은 혐오표현 표적 집단의 속성과 범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지만, 혐오표현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특정 집단 정체성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4면.
- 5)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i) 온라인의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형태로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 ii) 연결망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순회성’(itinerancy)을 가진다는 점, iii) ‘익명성’을 기반으로 표출되어 파괴적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iv) 전지구적으로 접근가능한 인터넷 망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파되고 있어 국경을 넘어서 ‘횡단적 관할’(cross-jurisdictional)을 가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면이 있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10-11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상에 동성애자, 외국인,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정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에 근거한 표현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⁶⁾

그런데 인터넷상의 표현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혐오표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표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등과 같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또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이나 불법정보가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보의 수집 및 전달의 측면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설계되어야 한다.⁷⁾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가 초래하는 위험에 직면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이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고자 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법적 노력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유사하게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⁹⁾

6)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서 파탄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내 서열순위가 불법체류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한국인 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KKK단 같은 인종청소주의자들이 없어서입니다.”라는 표현이, 여성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일명 “개똥녀” 사건이 있었다.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5, 216-222면.

7) 권형돈 교수는 “미디어 소비형태가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정보의 수집·전달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과 거짓정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범리 -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법 제51권, 2020, 6면.

8)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5, 207-214면;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범리 -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법 제51권, 2020; 전학선,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을 결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9) 이와 관련된 최근의 법률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참조.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입법례 및 관련된 헌법적 논의는 우리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규제법률로 이해되고 있는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Loi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의원의 이름을 따서 일명 ‘아비아 법률’(Loi Avia)이라고도 하지만,¹⁰⁾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라고 함 - 의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 및 상원(Sénat)에서의 논의, 프랑스 하원에서의 입법절차 가운데 제시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의 의견,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이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국내의 입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서는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입법이유,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한 ‘인터넷상의 증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의 주요내용,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하원과 상원에서의 주요 토의사항, 법률안에 대한 프랑스 국사원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최종적으로 가결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

10)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157면에서는 제안단계의 의원발의법률안인 ‘온라인상 혐오 대응에 관한 법률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하원 및 상원에서의 격렬한 토의를 거쳐 그 성격이 상당히 변경되었다. 하원과 상원에서 전체적 토의절차에 대해서는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lutte_contre_haine_internet?etape=15-AN1-DEPOT 참조.

법’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출발은 프랑스 대통령과 하원다수파들의 조급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프랑스 국내의 여러 국가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 자체가 헌법과 유럽연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법률안이 제출될 단계에서는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은 인터넷상 혐오표현 이외에도 인터넷상 불법정보 또한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후의 법적 상황”에서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의 형식으로 제기되어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의 주요내용,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의 의의 및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와 하원다수파의 주도로 가결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부정적 판단은 예견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Ⅲ.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후의 법적 상황”에서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 이후에 전개된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인터넷상의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상 혐오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Ⅳ.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의 비교검토”에서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내법 규정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의 비교 및 검토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 맺음말”에서는 “Ⅱ.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Ⅲ.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후의 법적 상황” 및 “Ⅳ.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의 비교검토”에서 살펴본 주요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II.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가. 법률안의 제정배경 및 입법이유

1) 법률안의 제정배경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프랑스 헌법상 집행권을 대표하는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2월 20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유대인 기구 대표 위원회’(Conseil représentatif des institutions juives de France, Crif)¹¹⁾와의 연례 만찬에서 인터넷상의 혐오(haine) 표현과 인종차별(racisme) 및 반유대인주의(antisémitisme)에 대하여 투쟁할 것이며,¹²⁾ 2018년에 수상에게 제출되었던 관련 보고서¹³⁾의 제안을 담은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을 2019년 5월 무렵에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당’(La République en marche, LRM) 소속 하원의원인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가 하원에 제출할 것임을 선언했다.¹⁴⁾

11) <http://www.crif.org/>.

12) 전학선,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53면.

13) Karim Amellal, Laetitia Avia, Dr Gil Taïeb는 2018년 9월 20일에 수상인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에게 ‘인터넷상에서 인종주의 및 반유대인주의에 대한 대처의 강화’(Renforcer la lutt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sur Internet)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i) 거대 플랫폼에게 24시간 내에 명백히 인종주의적 또는 반유대인주의적 콘텐츠를 제거할 것을 명하고, ii) 거대 플랫폼에게 유럽 내에 법정 대리인을 둘 것을 명하고, iii) 거대 플랫폼에게 불법 정보의 제거, 링크삭제 및 봉쇄와 관련된 투명성 의무를 명하고, iv) 거대 사회연결망과 검색엔진에게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제거 또는 링크삭제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것 등 20개의 제안을 하였다.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te/2018/09/rapport_visant_a_renforcer_la_lutte_contre_le_racisme_et_lantisemitisme_sur_internet_-_20.09.18.pdf, 2023. 04. 20.

14)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9/02/21/au-diner-du-crif-macron-promet-des-actes-tranchants-pour-repondre-a-l-antisemitisme_5426022_823448.html, 2023. 04. 20. 방문; <http://libertescherries.blogspot.com/search?q=discours+de+haine+sur+internet>, 2023. 04. 20. 방문.

그런데 이와 같은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은 입법절차의 측면에서 의원발의법률안을 법률안의 위헌성을 방지하고, 유럽연합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회를 회피하고, 법률안의 최종 가결만을 위한 하나의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¹⁵⁾

왜냐하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법률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관련된 기초적 연구를 주도한 것은 정부 측임에도, 정부제출법률안(projet de loi)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경우 입법영향평가서(études d’impact)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국사원(Conseil d’État)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¹⁶⁾¹⁷⁾

2) 법률안의 입법이유

2019년 3월 20일에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에 등록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과 함께 제출된 입법이유서(EXPOSÉ DES MOTIFS)는 법률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입법이유서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혐오,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였다. 즉 정보 및 문화에 대한 접근 수단인 인터넷은 가명이나 스크린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악플러에 의해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으며, 2016년 5월의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시민의 58%가 인터넷이 혐오발언의 주요한 발생지라고 응답

15)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0.

16) 프랑스 헌법 제39조는 “① 수상과 국회의원은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② 정부제출법률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양원 중 한 원에 제출된다. 재정법률 및 사회보장자금조달법률은 하원에 먼저 제출된다. 제44조 제1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발의법률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된다. ③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된 정부제출법률안은 조직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헌법 제34-1조, 제39조 및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Loi organique n° 2009-403 du 15 avril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s articles 34-1, 39 et 44 de la Constitution)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에 입법영향평가제도(études d’impact)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한다. <https://www.legifrance.gouv.fr/contenu/menu/autour-de-la-loi/legislatif-et-reglementaire/etudes-d-impact-des-lois/les-etudes-d-impact-textes-de-reference>, 2023. 06. 05. 방문.

17) 마크롱 대통령은 가짜뉴스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2018년 7월 30일의 정보조작대처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http://libertescherries.blogspot.com/search?q=discours+de+haine+sur+internet>, 2023. 04. 20. 방문). 프랑스의 2018년 7월 30일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의 소개 및 관련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은 한동훈,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9 참조.

한 점과 프랑스 시민의 70% 이상이 이미 SNS상 혐오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을 입법이유서는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법이유서는 이와 같은 지옥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조사와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⁸⁾

특히 입법이유서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이유서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 일상의 디지털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보호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이유서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최근의 노력과 프랑스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사회연결망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¹⁹⁾은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²⁰⁾²¹⁾ 독일의 ‘네트워킹단속법’(즉, loi NetzDG du 1er octobre 2017)²²⁾이 규정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법률

18)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의원은 관련 학술대회에서 트위터 같은 곳에 ‘Sale noir’(비열한 흑인), ‘Sale juif’(비열한 유대인)라고 게시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소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Basile Ader/Laetitia Avia, Proposition de la Avia, loi de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vers une pré-responsabilité éditoriale des plateformes,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 10.

19)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801164>, 2023. 06. 05. 방문.

20)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의원은 관련 학술대회에서 현재에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LCEN은 현재의 인터넷 습관과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LCEN은 프랑스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사회연결망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Basile Ader/Laetitia Avia, Proposition de la Avia, loi de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vers une pré-responsabilité éditoriale des plateformes,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p. 10-11.

21)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출되기 이전에도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포르노그래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해치는 내용의 표현물, 폭력적 성격의 표현물 등과 같은 불법정보(contenu illicite)를 형법전 또는 1881년 7월 29일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포르노적 성격의 표현물에 대해서는 형법전 제227-24조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포르노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형법전 제227-23조가, 폭력적 성격 및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성격의 표현물에 대해서는 형법전 제227-24조가, 인종적 증오 등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1881년 7월 29일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4조의2가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200-227면 참조.

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

나.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법률안 제1조²⁴⁾는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opérateurs de plateformes)에 대한 새로운 행정적 책임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 사업자는 월간 접속량을 기준으로 하며, 데크레(décret)²⁵⁾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받은 사업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
- 22) 독일의 네트워크단속법에 대한 국내소개로는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범리 -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법 제51권, 2020;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계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참조.
- 23) EXPOSÉ DES MOTIFS,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 24) 제1조 “① 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률(2004년 6월 21일자) 제2004-575호 제6조 I-3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접속자 수가 법에 명시된 일정 수위를 넘어선 대중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자간의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시하는 소비법 제L.111-7조에서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1881년 7월 29일자) 제24조 제5항과 6항 및 제33조의 3항 및 4항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콘텐츠를 고지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다.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인종, 종교, 민족,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혐오선동 및 비방을 담은 콘텐츠 근절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다.
- ② II.- I.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사업자를 최고(催告)한 이후,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관련한 법(1986년 9월 30일) 제86-1067에 명시된 조건 내에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반복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전년 회계연도 연간 총매출의 4%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 ③ II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2004년 6월 21일) 제2004-575의 제6-I-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 ④ -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된 콘텐츠의 게재한 사람이 해당 삭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콘텐츠 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5-236면.
- 25) ‘데크레’(décret)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데크레는 제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최고재판소의 심의를 거친 명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 단순한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데크레는 개입영역에 따라 헌법 제37조의 독자명령과 헌법 제21조의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따라서 프랑스 국내에서 월간 접속량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속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명백하게(manifestement) 혐오를 선동하거나, 인종, 종교,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모욕을 하는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신고(notification)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이와 같은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률안 제1조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²⁶⁾가 이들 플랫폼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의 4%까지 금전적 재제를 부과할 수 있다.

법률안 제1조는 종래에 있었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 제6-I-2조의 내용 가운데 불법정보의 종류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제거결정 또는 유지결정을 다룰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⁷⁾

그리고 법률안 제1조는 혐오라는 모호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혐오적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⁸⁾ 즉 법률안 제1조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 제5항 및 제6항²⁹⁾, 제33조 제3항 및

헌법은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것이 헌법 제37조에 의한 독자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이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행명령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283-284면

26) <https://www.csa.fr/>; 현재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디지털 시대에 문화작품에 대한 접근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2021년 10월 25일 법률'(LOI n° 2021-1382 du 25 octobre 2021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에 따라 Hadopi와 결합하여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으로 통합되었다.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iTOHZByUk>, 2023. 04. 12. 방문.

27)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 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28) Emmanuel Dreyer, Présentation de la proposition de la Avia,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 14.

29)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5항 : 그 출신이나 소속을 이유로 삼거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23조에서 열거한 수단 중의 하나를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한 사람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1개의 형벌만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제6항 :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제4항³⁰⁾에 명백히(manifestement) 반하는 일체의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종, 종교, 민족, 성,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모욕이나 혐오 또는 폭행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³¹⁾

2) 제2조

법률안 제2조³²⁾는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du

장애를 이유로 전술한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형법」 제 225-2조 및 제432-7조에 규정된 차별을 선동한 사람은 이전 문단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3조 : 1명 이상의 사람이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연설, 구호, 연호 또는 위협적 발언의 수단,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판매, 배포, 발매 또는 진열된 서적, 인쇄물, 소모, 판화, 회화 작품, 표장, 이미지 또는 그 밖의 문자·음성·영상 매체의 수단,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현수막 또는 게시물의 수단 및 전자적 방식의 공중통신 수단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여 이 선동의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인은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국회도서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2021.12.22 개정), <https://law.nanet.go.kr/lawlibrary/totalsearch/list.do?outerTlawView=Y&cn=TLAW1202200719#n>, 2023. 04. 21. 방문.

30)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3항 : 그 출신이나 소속을 이유로 삼거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술한 같은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한 사람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4항 :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전술한 같은 조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한 사람은 이전 문단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국회도서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2021.12.22 개정), <https://law.nanet.go.kr/lawlibrary/totalsearch/list.do?outerTlawView=Y&cn=TLAW1202200719#n>, 2023. 04. 21. 방문.

31) Basile Ader/Laetitia Avia, Proposition de la Avia, loi de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vers une pré-responsabilité éditoriale des plateformes,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 11.

32) 제2조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자) 제2004-575호의 제6-I-5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② 5.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송되었을 때 제2항에 명시된 이들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 신고자가 자연인일 경우는 성, 이름, 이메일 주소를,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 업체 명칭, 이메일 주소를, 신고자가 행정 당국일 경우는 명칭과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거나 본 항의 II.에 언급된 신분요소들

④ - 법령에 나열된 목록에서 선택한 쟁점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속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해당 콘텐츠의 접근이 가능한 전자주소(들)

⑤ II.- 제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모든 신고에 대하여 즉시 수령 사실을 알리고 신고자의 삭제요청에 대해 동일 조항에 언급된 콘텐츠일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에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응답한다.

⑥ 사업자들은 프랑스 영토에 위치한 사용자들을 위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2004년 6월 21일자) 제2004-575호 제6조 I-7항에 명시된 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획일화된 신고 장치를 마련하고 누구나 서비스 사용 언어로 불법콘텐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III.- 제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신고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데 적합하고 필수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절차가 불법 콘텐츠의 피해자나 증인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종래의 비판을 수용하여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다.

법률안 제2조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 정보의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 제6- I -5조의 규정을 수정하였다. 즉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 I -5조는 불법 콘텐츠 때문에 자연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 이름, 직업, 주소, 국적, 출생일 및 출생지, 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사건 발생위치, 게시물 삭제가 필요한 사유,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저자 또는 편집자에게 중단, 제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의 사본 또는 이와 같은 저자 또는 편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플랫폼 이용자에게 너무 과도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제출된 법률안 제2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버튼을 설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비례한 신고처리를 위한 인적 및 기술적 수단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였다.³³⁾

3) 제3조

법률안 제3조³⁴⁾는 불법 콘텐츠의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관한 명확한 정보의 제공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불법 콘텐츠의 피해자에게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³⁵⁾

적인 인적 수단 또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6면.

33)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p. 6-7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34) 제3조 “제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제1조에서 언급된 콘텐츠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수단을 포함한 정책 및 지원 가능한 주체들에 관한 공적이며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6면.

35)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 7 <https://www.assemblee->

4) 제4조

법률안 제4조³⁶⁾는 명백하게(manifestement) 혐오를 선동하거나, 인종, 종교,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모욕을 하는 일체의 콘텐츠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률안 제4조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접수된 신고의 수, 신고된 범죄의 분포, 신고가 남용된 경우의 횡수 및 인터넷상의 혐오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한 인적 및 재정적 수단을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같은 보고에 따라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공개하기 위한 정보의 목록을 정한다.

법률안 제4조는 또한 1986년 9월 30일 법률에 새로운 하나의 항인 제17-3항을 추가하여,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혐오 콘텐츠의 대처와 관련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였다.³⁷⁾

nationale.fr/dyn/15/textes/1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36) 제4조 “① I.-의사소통의 자유에 관한 법(1986년 9월 30일) 제86-1067 제17-2조항 뒤에 17-3조항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②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인종, 종교, 민족, 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혐오선동 및 모욕의 내용을 담아 인터넷 상에 게재되는 콘텐츠 확산 근절에 기여한다.

③ 필요시,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사이버혐오 근절을 위한 법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 근절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④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사이버혐오 근절을 위한 법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의 의무 수행을 모니터링한다.

⑤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법적용과 그 효율성에 대한 정기종합평가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해당 법률 제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종합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⑥ II.-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자들은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선동 및 증상모독 콘텐츠 근절을 위해 수행한 활동 및 수단을 보고한다.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발표할 정보의 목록을 정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7면.

37)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p. 7-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5) 제5조

법률안 제5조³⁸⁾는 혐오 콘텐츠를 작성하는 자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종래의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의 규정에 따라 이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여, 이들 정보는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법률안 제5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프랑스에 법적 대표자(représentant légal)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한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금액을 상향시켰다.³⁹⁾

6) 제6조

법률안 제6조⁴⁰⁾는 혐오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하거나, 링크를 삭

38) 제5조 “① I.-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률 (2004년 6월 21일자) 제2004-575호 제6조 VI-1항에 명시된 금액 ‘7만5천 유로’는 ‘25만 유로’로 대체한다.

② 제1조에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위해 프랑스 영토에서 대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대리인을 의미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7면.

39)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 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40) 제6조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대한 법 (2004년 6월 21일자) 제2004-575호 제6조 I-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1. ‘제2항 또는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이라는 조문은 ‘또는 2항’으로 대체한다.

③ 2. 여섯 개의 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④ ‘행정 당국은 본 법률 I-1항에 언급된 모든 이 및 모든 도메인명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웹 사이트, 서버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 매체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기결사항 결정 중인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⑥ ‘또는 기결사항 결정을 통해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⑦ ‘행정당국은 또한 모든 검색엔진이나 인명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자주소의 검색제공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⑧ ‘기결사항 결정 중인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⑨ ‘기결사항 결정을 통해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로의 접근이 가능’”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7-238면.

제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초의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봉쇄 또는 링크를 삭제하기 위한 결정을 받은 사이트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대한 봉쇄를 명할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⁴¹⁾

7) 제7조

법률안 제7조⁴²⁾는 이 법률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국가 및 사업자들이 인터넷상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포함되도록 하였다.⁴³⁾

2. 법률안에 대한 하원 및 상원에서의 토의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는 ‘합리화된 의원내각제’(parlementarisme rationalisé)⁴⁴⁾의 이념에 따라 정부가 입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입법절차의 전체적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⁴⁵⁾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 또한 하원에 제출된 이후에 집행권⁴⁶⁾의 우월성이 투영된 프랑스

41)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 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42) 제7조 “정부는 매년 이 법률의 이행 및 불법콘텐츠 근절을 위한 수단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피해자를 위한 교육, 예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238면.

43)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p. 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1785_proposition-loi, 2023. 04. 20. 방문.

44) “합리화된 의원내각제”(parlementarisme rationalisé)라는 용어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의회제의 형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Boris Mirkine-Guetzevitch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Michel Debre에 의해 의회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Pierre Avril/Jean Gicquel, Droit parlementaire, Montchrestien, 2010, p. 5.

4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150-178면 참조.

46)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Gouvernement)라는 용어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부”와 국가원수(chef de l'État)인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을 포괄하는 의미로 “집행부”(pouvoir exécutif)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또한 제2장은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 제3장은 “정부”(Gouvernement)로 규정하고 있다.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pp. 435-436.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입법을 위한 원칙적인 절차이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토의가 무한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왕복심의절차(navette)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는 상원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해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2항47)에 규정된 신속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를 2019년 5월 2일에 사용하였다.⁴⁸⁾

그러나 신속절차에 따라 소집된 양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⁴⁹⁾

47) 프랑스 헌법 제45조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법률안 및 의원발의법률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와 제41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수정안은 비록 간접적이더라도 제출된 또는 이송된 법률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제1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② 양원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정부제출법률안 또는 의원발의법률안이 각 원에서 2차 독회를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부가 신속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원의 1차 독회 후 양원의장단회의가 이에 대해서 공히 반대하지 않을 경우 1독회 이후에, 수상 또는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 공동으로 행동하는 양원의장은 토의 중인 조항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할 임무가 부여된 양원동수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③ 정부는 각 원에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된 의안을 채택하도록 부의할 수 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개정안도 접수될 수 없다.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법률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법률안이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법률안 또는 하원에서 가결된,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여러 개의 수정안으로 개정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48) <https://www.vie-publique.fr/loi/268070-loi-avia-lutte-contre-les-contenus-haineux-sur-internet>, 2023. 04. 20. 방문;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법률안에 대한 하원과 상원 간의 타협의 분위기를 망치는 역할을 했으며, 결국 법률의 질의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0.

49)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2항은 “② 양원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정부제출법률안 또는 의원발의법률안이 각 원에서 2차 독회를 거친 후에도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각 원의 1차 독회 후 양원의장회의가 공히 반대하지 않고 가속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수상과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 공동으로 행동하는 양원의장은 토의 중인 조항에 대한 법안제출을 담당할 양원동수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하원과 상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양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원동수위원회의 운영은 정부가 항상 상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양원동수위원회의 절차를 중단 및 진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원에 제출된 양원동수위원회의 법률안은 정부에 의해서 제안되거나 정부가 수락한 수정안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원동수위원회의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자면, 1) 양원동수위원회가 타협안을 도출한 경우 : 정부는 ㉠ 첫 번째 선택으로 정부가 수락하거나 제안한 수정안으로 보충된 양원동수위원회의 법률안이 하원과 상원에 의해 가결될 수 있으며, ㉡ 두 번째 선택으로 양원동수위원회의 법률안이 하원과 상원에 의해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1독회 후에 정부는 하원에 양원동수위원회가 만든 법률안 또는 하원에 의해 가결되고, 필요한 경우 상원에 의해 채택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정안에 의해 개정된 최종법률안을 하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경우 법률안의 왕복 심의는 다시 시작되게 된다. 2) 양원동수위원회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 정부는 새로운 1독회

가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과 관련된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새로운 독회를 한 다음에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하원 및 상원에서의 토의는 i) 2019년 7월 9일에 하원 제1독회에서의 가결, ii) 2019년 12월 17일의 상원 제1독회에서의 가결, iii) 2020년 1월 8일의 양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에 의한 타협안 도출의 실패, iv) 2020년 1월 22일의 하원에서의 새로운 독회의 개최, v) 2020년 2월 26일의 상원에서의 새로운 독회의 개최, vi) 2020년 5월 13일 하원에서 최종적 가결 순으로 진행되었다.⁵⁰⁾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과 관련된 입법 절차의 실제적 진행은 대통령과 의회다수파가 동일한 정치적 세력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입법절차의 특징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내의 입법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원의원들이 가지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소권은 다수의 힘에 의해 진행된 입법절차에 따라 가결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⁵¹⁾

가. 하원 제1독회에서의 토의

1) 법률안에 대한 국사원의 의견제출

프랑스 국사원은 원래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2항⁵²⁾에 근거하여 정부제출법률안(Projet

후에 하원으로 하여금 하원에 의해 가결되고, 필요한 경우 상원에 의해 채택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정안에 의해 개정된 최종법률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경우 법률안의 왕복심리는 다시 시작되게 된다.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연구원, 2020, 161-162면.

50)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38745184/>, 2023. 04. 20. 방문.

51) 프랑스 헌법 제61조 “① 헌법재판소에는 심판회부는 조직법률의 경우에는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한다. ②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은 8일로 단축된다. ...”

52) 프랑스 헌법 제39조 “② 정부제출법률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양원 중의 하나의 원에 제출된다. ...”

de loi)에 대해서만 의견(Avis)을 제시한다. 그러나 2008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에 따라 하원의장은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기 전에 국사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프랑스 헌법 제39조 제5항⁵³⁾).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따라 국사원은 2019년 5월 16일에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문의견(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⁵⁴⁾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국사원은 하원에 제출한 자문의견을 통해서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또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 콘텐츠의 신속한 유포가 초래하는 침해의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법률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15).

그러나 국사원은 법률안의 여러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원에 권고하였다. 국사원은 i) 처음 제출된 법률안이 법적용의 대상 사업자로 설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opérateurs de plateformes)의 개념에 검색엔진(moteurs de recherche)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16, §17), ii) 법률안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의 영역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조 제 I 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역인 소위 ‘가증스러운 콘텐츠’(contenus dits “odieux”)⁵⁵⁾ - 즉 불법정보 -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18), iii) 혐오 콘텐츠의 제거는 법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혐오 콘텐츠의 제거 또는 링크삭제의 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독자적인 하나의 범죄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25, §26), iv) 혐오 콘텐츠에 대한 삭제거부의 경우 또는 삭제요청을 받은 콘텐츠 주체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국내법적 구제수단(voies de recours internes)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v)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32) 등을 권고하였다.⁵⁶⁾

53) 프랑스 헌법 제39조 “⑤ 양원의장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원의 구성원 중의 하나에 의해 제출된 의원발의법률안을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각 원의 구성원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국사원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54)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Section de l'intérieur N° 397368, Séance du jeudi 16 mai 2019.

55) 즉, 테러, 반인도적 범죄 또는 노예범죄의 옹호, 출신, 어떤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의 소속여부,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선동, 아동 포르노의 배포 등.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Section de l'intérieur N° 397368, Séance du jeudi 16 mai 2019, §18.

56)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Section de

2) 기타 하원 제1독회에서의 수정 사항

이와 같은 국사원의 수정의견은 보고자인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하원의원에 의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그 외에도 최초의 법률안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⁵⁷⁾

구체적으로, 하원 제1독회에서는 i) 24시간 내에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검색엔진(moteurs de recherche)에게도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ii) 혐오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도 테러행위의 선동 및 옹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콘텐츠,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항 등 불법적 콘텐츠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iii) 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명백한 혐오 콘텐츠에 대한 링크삭제를 실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문제가 되는 불법적 콘텐츠 대신에 불법적 콘텐츠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로 대체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iv) 플랫폼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콘텐츠를 제거 또는 링크삭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v) 명백한 혐오 콘텐츠에 대한 신고 형식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vi) 신고를 남용하거나,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였고, vii) 인터넷상의 혐오 콘텐츠에 대한 신고절차를 개선하였고, viii) 인터넷 사업자가 사법기관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벌금액을 3배로 인상하는 규정이 새로 설치되었고, ix) 인터넷상의 혐오 메시지의 전파를 막기 위한 내용을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⁵⁸⁾

3)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의 의견발표

한편 하원 제1독회에서 법률안을 가결한 날인 2019년 7월 9일에 프랑스의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⁵⁹⁾는 전체회의

l'intérieur N° 397368, Séance du jeudi 16 mai 2019.

57) Pierre Januel, La proposition de loi contre la haine en ligne remaniée, 21 juin 2019,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proposition-de-loi-contre-haine-en-ligne-remaniee#.ZCuzD3ZByUk>; Emmanuel Dreyer 교수는 원래의 법률안이 국사원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후에야 보여줄 만한 법률안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Emmanuel Dreyer, Présentation de la proposition de la Avia, *Légitimes* - Hors série #63, 2020-1, p. 14.

5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alt/lutte_contre_haine_internet, 2023. 04.20. 방문; Pierre Januel, La proposition de loi contre la haine en ligne remaniée, 21 juin 2019,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proposition-de-loi-contre-haine-en-ligne-remaniee#.ZCuzD3ZByUk>

59) 프랑스의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합의제 기관이며, 인권, 인도주의적 활동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부여된 근본적 보장에 대한 존중 등의 영역에서 정부 및 의회에 조언 또는 제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ssemblée plénière)에서 47표 찬성 및 1표 반대로 채택된 의견을 발표하였다.⁶⁰⁾

프랑스의 국가인권자문위원회는 법률안이 일종의 사적 검열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률안의 주요구정의 삭제 및 수정을 권고하였다.⁶¹⁾

즉 국가인권자문위원회는 i)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 콘텐츠의 삭제를 명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적 제재가 따르도록 규정한 법률안 제1조는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명백한 혐오 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권을 법관이 아닌 사인에게 부여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ii) 법률안이 예방적 규정인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없다는 점, iii)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⁶²⁾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및 상원 제1독회에서의 토의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의회 내의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정보사회에 관한 일체의 법률안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015년 9월 9일의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UE) 2015/1535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9 septembre 2015)의 규정⁶³⁾에 따라 2019년 8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프랑스 하원 제1독회에서 가결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을 통지하였다.

<https://www.cncdh.fr/presentation>, 2023. 04. 17. 방문.

60) Avis relatif à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A - 2019 - 1), 7 juillet 2019.

61) Emmanuel Dreyer, Présentation de la proposition de la Avia,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p. 13-14.

62) Avis relatif à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A - 2019 - 1), 7 juillet 2019.

63) ‘2015년 9월 9일의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UE) 2015/1535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9 septembre 2015)은 정보사회의 생산물 또는 서비스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이 계획하는 일체의 새로운 법률안은 사전에 유럽연합 및 다른 회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법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럽연합공동체 내에서의 정보사회의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교환을 방해할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에 대한 통지에서 최종적 채택까지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https://www.entreprises.gouv.fr/fr/libre-circulation-des-produits/la-libre-circulation-des-marchandises-europe/la-transparence-des-regles-techniques-nationales>, 2023. 06. 04. 방문.

그리고 이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 발의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며, 적극적 반대의사가 포함된 의견⁶⁴⁾을 2019년 11월 22일에 프랑스에 통지하였고, 그 뒤에 프랑스 상원은 2019년 12월에 법률안에 대한 제1독회를 개최하였다.⁶⁵⁾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은 받은 프랑스 상원 제1독회는 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에 대한 전면적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 법률안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Directive du 8 juin 2000 relative à certains aspects juridiques de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et notamment au commerce électronique)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을 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안의 규정이 전자 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적용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률안이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과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i)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침해, ii) 통지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iii)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3조⁶⁶⁾ 제1문은 각 회원국의 영토에서 설립된 서비스업자는 회원국의 국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64) Notification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2019/412/F du 22 novembre 2019 sur la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65) Emmanuel Dreyer, Présentation de la proposition de la Avia,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p. 14.

66) “제3조 역내 시장

1. 각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 설립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는 조화된 분야에 관한 적용 가능한 회원국의 국내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조화된 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에서 언급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저작권관계자료 2011-08), 2011, 84-85면.

8일 지침’ 제3조 제2문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제출한 법률안은 프랑스 이외에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된 인터넷 플랫폼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3조 제2문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사회서비스의 국경을 초월한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3조 제4문⁶⁷⁾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atteint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를 막기 위해서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3조 제4문이 규정하는 예외는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적일 것도 요구한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법률안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인터넷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을 구별하지 않고 규율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이 요구하는 비례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14조⁶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가 존재한

67) “제3조 4.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이행된다면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제2항으로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그 조치는,

(i) 다음 이유 중 하나가 필요하다.

공공정책, 특히 미성년자보호 및 인종·성별·종교·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와 개인에 관한 인간존엄성 위반의 모든 유인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형사범죄 예방·조사·탐지·소추

공중보건 보호

국가안전·국방을 포함한 공공안전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ii) (i)목에서 언급된 목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목적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훼손위험이 존재하는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iii) 그러한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저작권관계자료 2011-08), 2011, 86면.

68) “제14조 관리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2. 이 조는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막도록 요구하는 법원 또

다는 등의 사정을 실제로 알았을 경우에 신속하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동하거나,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통지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Décision de juillet 2011 L'Oréal c. EBay).

그런데 프랑스의 법률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정보 및 혐오 콘텐츠에 대한 통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경우에 혐오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를 요구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찾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14조의 규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판단하였다.⁶⁹⁾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14조⁷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통지를 통해 불법 콘텐츠

는 행정청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3. 제1항은 서비스수신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뢰 또는 감독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저작권관계 자료 2011-08), 2011, 96면.

69) 즉 프랑스의 법률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 제14조의 규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결국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70) “제14조 관리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2. 이 조는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막도록 요구하는 법원 또는 행정청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3. 제1항은 서비스수신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뢰 또는 감독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저작권관계 자료 2011-08), 2011, 96면.

를 알게 되자마자 신속하게(“promptement”)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프랑스의 법률안은 24시간 내에 혐오 콘텐츠의 제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통지가 불명확할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더 편하며,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삭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포르노에 관한 콘텐츠의 경우 식별하기에 용이한 콘텐츠이지만, 법률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투자하기 보다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이는 결국 불법 콘텐츠 이외에 수많은 합법적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판단하였다.⁷¹⁾

2) 상원 제1독회에서 논의

프랑스 상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과 유사하게 하원 제1독회에서 가결한 법률안 가운데 거대 플랫폼(예를 들면 Facebook, Instagram, YouTube ou Twitter)에 대해 24시간 내에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1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원 제1독회에서 가결한 법률안 제1조를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한 법률안을 2019년 12월 17일에 가결했다.⁷²⁾

71) Roseline Letteron 교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법률안을 유럽연합법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서 작성된 기형적 법률안으로 평가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La proposition Avia sur la “cyberhaine” torpillée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jeudi 28 novembre 2019, <http://libertescherries.blogspot.com/search?q=proposition+avia>, 2023. 04. 26. 방문.

72) Proposition de loi, modifiée, par le Sénat,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le 17 décembre 2019, T.A. n° 0036, <https://www.senat.fr/leg/tas19-036.html>, 2023. 04. 27. 방문;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19/12/11/haine-en-ligne-le-senat-supprime-deux-dispositions-phares-de-la-loi-avia_6022511_4408996.html.

다. 상원 제1독회 이후의 의회 내 토의

법률안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상원의 적극적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하원은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였고, 코로나 19 보건위기가 한창일 무렵에 격리 해제후 1주일도 안되어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⁷³⁾

상원 1독회 이후 진행된 입법절차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안에 대한 프랑스 상원 제1독회 이후에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양원동수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2020년 1월 8일에 개최되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하원 측은 12월 17일 상원 제1독회에서 폐지되었던 24시간 내에 명백한 혐오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안 제1조의 회복을 원했지만, 상원은 이를 거부하였다.⁷⁴⁾

따라서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4항⁷⁵⁾에 따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법률안에 대한 새로운 독회를 한 다음에 정부는 하원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하원은 2020년 5월 13일에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가결하였다.⁷⁶⁾

73)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1.

74)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rapports/1785/115b2558_rapport-fond, 2023. 04. 27. 방문; Proposition de loi Avia : échec de la CMP, <https://www.legipresse.com/011-50523-proposition-de-loi-avia-echec-de-la-cmp.html>, 2023. 04. 06. 방문.

75) 프랑스 헌법 제45조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법률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법률안이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아니하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법률안 또는 하원에서 가결된,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채택된 1개 또는 여러 개의 수정안으로 개정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76)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Texte définitif),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t0419_texte-adopte-seance, 2023. 04. 27. 방문.

3. 최종적으로 가결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내용

가.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티시아 아비아(Laetitia Avia)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은 프랑스 국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원 제1독회에서 상당히 수정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상의 혐오를 금지하기 위한 의원발의법률안’이 유럽연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프랑스 상원 또한 동일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상원 제1독회 이후의 입법절차는 정부와 하원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하였으며, 법률안은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⁷⁷⁾로 최종적으로 가결되게 된다.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 ‘정보제공자’(éditeurs)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특징 및 책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 제공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이다.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유하지 않고 단지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만큼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⁷⁸⁾

그리고 프랑스법상의 인터넷 사업자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와 정보제공자(éditeurs)가 있으며, 이들의 개념은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77)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031970>, 2023. 05. 04. 방문.

78) 황승훈/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07면.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로 번역될 수 있으며,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공중통신수신자가 전송하는 모든 종류의 신호·문자·영상 및 음향 형태의 모든 메시지를 저장하여 온라인 공중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제6- I 조 2)이라 정의한다.

한편, 정보제공자(éditeurs)는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에서는 “그 활동이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편집하는자”(제6-III조의 I)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는 ‘정보제공자’(éditeur)이며,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하는 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또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hébergeur)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의 개념에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을 통해 도입된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엔진 및 플랫폼이 포함된다.⁷⁹⁾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와 정보제공자(éditeurs)의 정의의 차이는 이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차이로 연결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에서 사용한 개념을 모방한 ‘정보제공자’(éditeur)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또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hébergeur)는 자신이 저장한 콘텐츠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만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21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 I 조 2 및 3은 “해당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이나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사실 및 상황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하였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는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4년 6월 10일 결정’(Décision n°

79) 상원 제1독회의 보고서는 하원 제1독회에서 가결된 법률은 일부의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또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hébergeur) - 즉 프랑스 내에서 접근가능한 일부 거대 사회연결망 및 검색엔진-에게 신고 후 24시간 내에 명백히 불법적인 혐오 콘텐츠에 대한 제거 또는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평가하였다.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égislation, du suffrage universel, du Règlement et d'administration générale (I) sur la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N° 197), Par M. Christophe-André FRASSA, p. 20.

2004-496 DC du 10 juin 2004)에서 “이 규정은 제3자가 명백하게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또는 법관이 불법적 콘텐츠의 제거를 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불법적 정보를 제거하지 않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또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hébergeur)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판시이유 9)고 판시하였고,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수용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판례 및 법규정에 따르면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또는 인터넷 콘텐츠 호스트)(hébergeur)는 제3자가 자신에게 신고한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법관에 의해 제거가 명해진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⁸⁰⁾

나.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1시간 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I은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가 포함된 인터넷 통신 서비스 사이트를 행정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규정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1조를 개정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가 규정하고 있었던 행정적 봉쇄규정은 연혁적으로 ‘국내 안전 성공을 위한 방향설정 및 계획을 위한 2011년 3월 14일 법률’(Loi n° 2011-267 du 14 mars 2011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제4조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테러 대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2014년 11월 13일 법률’(Loi n° 2014-1353 du 13 novembre 2014 renforça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제12조에 의해 수정된 규정이다.

‘국내 안전 성공을 위한 방향설정 및 계획을 위한 2011년 3월 14일 법률’은 형법전 제 227-23조⁸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르노적 성격을 가지는 미성년자의 이미지나 표현의 유

80) Francis Donnat, 《Contenus illicites sur Internet et hébergeurs》, Nouveaux Cahiers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52, juin 2016, pp. 37-46.

81) ‘형법전’ “제227-23조 :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영상 또는 묘사가 음란물 성격을 띠는 때에는 배포를 목적으로 이를 촬영, 녹화 또는 전달한 사람은 5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영상 또는 묘사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범행이 미성년자의 영상물 또는 묘사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제공, 사용 또는 배포

포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에게 형법전 제227-23조에 반하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사이트를 통지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즉시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금고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⁸²⁾

그런데 ‘테러 대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2014년 11월 13일 법률’은 이 규정의 위치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로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하였다.

첫째로, 이 봉쇄규정의 적용범위를 테러행위의 수행을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테러행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콘텐츠(즉 형법전 제421-2-5조⁸³⁾에 반하는 콘텐츠)로 확대하였다.

둘째로, 행정기관이 문제의 사이트를 봉쇄하는 절차가 개정되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봉쇄대상이 되는 사이트를 알리기 전에 행정기관⁸⁴⁾은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에게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가 24시간 내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

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람은 7년의 징역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볼 수 있는 온라인통신서비스를 상습적으로 또는 유로로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소지하는 사람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의 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사람은 10년의 징역 및 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에 해당하는 경죄 미수범도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조의 규정은 미성년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음란물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이미지의 촬영 또는 녹화당시에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예외로 한다.”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82)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Décision n°2011-625 DC du 10 mars 2011.

83) ‘형법전’ “제421-2-5조 : 테러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행위는 5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84) 여기서의 행정기관은 2015년 1월 5일의 데크레(Décret n° 2015-125 du 5 février 2015 relatif au blocage des sites provoquant à des actes de terrorisme ou en faisant l'apologie et des sites diffusant des images et représentations de mineurs à caractère pornographique) 제1조에 근거하는 ‘프랑스 경찰청’(Dir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 내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범죄대처청’(Office central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lié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이다. Emmanuel Dreyer, La censure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 384, Juillet-Août 2020, p. 413.

공자에게 지체 없이 봉쇄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지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또한 이와 같은 사이트의 검색을 막기 위한 일체의 유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에게도 문제의 사이트를 통지할 수 있다.⁸⁵⁾

따라서 봉쇄절차는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I은 이와 같은 종래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을 변경하였다.⁸⁶⁾ 변경된 법률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85) 이와 같은 봉쇄권한은 인터넷 사업자가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에 있는 경우에 그 의미를 발휘한다.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3.

86)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에 따라 개정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 : 형법전 421-2-5조에서 규정하는 테러행위를 선동하는 것 또는 테러행위를 옹호하는 것에 대처할 필요성 또는 형법전 제227-23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영상 또는 묘사의 배포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률 제6조 I의 2 또는 III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에게 본 법률 제6조 I의 5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지한다. 행정기관은 동시에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한다.

본 법률 제6조 I의 2 또는 III에서 규정한 사람은 지체없이 통지의 접수를 알린다. 본 법률 제6조 I의 2 또는 III에서 규정한 사람은 이와 같은 통지가 있는 후 1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거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본 법률 제6조 I의 2 또는 III에서 규정한 사람은 이와 같은 통지가 있는 후 1 시간 내에 행정기관에게 처리결과를 알린다.

이 시간 내에 이와 같은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형법전 421-2-5조와 형법전 제227-23조를 위반한 인터넷 공중통신서비스의 전자주소목록을 고지할 수 있다.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지체없이 이들 주소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본 법률 제6조의 III에서 규정한 사람이 제6조의 III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본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보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고, 본 항 제1문에서 규정한 고지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한 제거 및 목록 요구를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내부에서 동 위원회 내에서 임기 동안 지명한 자격있는 인사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은 인사는 정보,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9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격있는 인사는 제거요구 및 목록의 작성, 공개, 전달 및 사용의 적법성을 보장한다. 자격있는 인사가 부적법함을 확인하는 경우, 언제든지 행정기관에게 이들 행위의 종료를 권고한다. 행정기관이 이와 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자격있는 인사는 권한있는 행정법원에 급속심리 또는 신청을 통해서 이를 제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그 콘텐츠가 형법전 421-2-5조와 형법전 제227-23조를 위반한 전자주소를 검색엔진 또는 디렉토리(전화번호와 같은 목록)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공중통신서비스의 검색 목록제공을 중단하기 위해 유용한 일체의 조치를 취한다. 본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

불법 콘텐츠의 제거요구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며, 1시간 내에 통지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6조의 적용에 따라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⁸⁷⁾

다. 명백한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II는 일정한 부류의 사업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에 새로운 제6-2조⁸⁸⁾를 도입하였다.

87)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pp. 1-3;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tTOHZByUk>, 2023. 04. 12. 방문.

88)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 : I. 본 법률 제6조 I의 2의 규정과 별도로, (대중적 콘텐츠의 공유를 위해서 여러 부분 연결하는 것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제안하고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이 테크레가 정하는 일정한 단계를 초과하는)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 I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연결된 공익의 관점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의한 신고가 있는 후 24시간 내에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의2 및 제33조 제3항과 제4항, ‘형법전’(code pénal) 제222-33조, 제227-23조 및 제421-2-5조, 그리고 범죄행위가 포르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전’(code pénal) 제227-24조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일체의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 활동이 정보처리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제3자가 제안하거나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의 분류 또는 목록을 제공하고,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이 테크레에서 정하는 일정한 단계를 초과하는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업자는 신고 후에 본조 I의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본조 I의 제1항에서 규정한 콘텐츠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본조 I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시간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본 법률 제6조의 I의 5의 마지막 항 전항 제2문에서 규정한 요소가 포함된 신고를 수령하고부터 진행된다.

본조 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 I의 마지막 항의 전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고의(caractère intentionnel)는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필요하고, 비례적인 심사가 없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즉 원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은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제거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 반하여,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을 통해 도입된 제6-2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엔진 및 플랫폼에게 인터넷 이용자가 신고한 후 24시간이라는 단축된 기간 내에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⁸⁹⁾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의 I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⁹⁰⁾에 규정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엔진, 분류 및 링크 사이트 그리고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콘텐츠,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교환이나 공유를 목적으로 여러 당사자와 관계를 맺는 플랫폼(platformes)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Facebook, Amazon, Ebay, Leboncoin.fr, Google,

II. 본조 I의 제1항에서 규정한 콘텐츠가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조 I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는 삭제의 대상이 된 콘텐츠대신에 해당 콘텐츠가 제거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메시지로 대체한다.

신고에 따라 제거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된 콘텐츠는 사법기관의 이들 내용(콘텐츠)에 대한 처분을 위한 목적으로만 형사범죄의 조사, 확인 및 소추의 필요를 위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임시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려지는 국사원의 데크레는 이들 콘텐츠의 보존기관 및 방법을 정한다.

III. 본 법률 제6조 I의 8과 민사소송법전 제835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은 급속심리 또는 신청에 근거하여 본조 I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에게 본조 I 제1항에서 언급한 규정에 반하는 콘텐츠 또는 사업자에 의한 콘텐츠의 제거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데 적합한 일체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V.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48-1조 내지 제48-6조에서 규정한 모든 결사는 제 48-1조 내지 제48-6조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유보 하에, 본 조 I의 마지막 항의 전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 민사 당사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V. 자신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함을 알고서 그 정보의 제거조치를 획득하거나, 배포중단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조 I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에게 본조 I이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콘텐츠 또는 활동을 나타내는 행위는 1년의 금고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89)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fTOHZByUk>, 2023. 04. 12. 방문.

90)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 : I. 1° 정보처리 알고리즘의 방법으로 제3자가 제안하거나, 인터넷 망에 게시한 콘텐츠, 재화 또는 용역을 분류 또는 검색목록제공, 2° 또는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공급, 콘텐츠,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교환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여러 당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공중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직업적으로 제안하는 일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규정한다.”

Dailymotion, Instagram, Twitt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6-2조의 1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데크레(décret)에 의해 정해진다.

제6-2조 I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는 일정한 범죄실행을 옹호하는 콘텐츠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콘텐츠이다.

- i) 출신 또는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그리고 성,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의 선동 또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선동(‘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 제5항, 제7항, 제8항⁹¹⁾).
- ii) 1945년 8월 8일 런던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에 규정되고, 같은 헌장 제9조에 따라 선언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프랑스 또는 국제 법원에서 이러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인(‘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의²⁹²⁾)

91)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 제5항 : 제23조에서 열거한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제1문단에 해당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또는 노동력 착취 범죄를 옹호한 사람이나 해당 범죄로 그 주범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적행위로 인한 중죄 또는 경죄를 옹호한 사람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7항 : 그 출신이나 소속을 이유로 삼거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23조에서 열거한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한 사람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1개의 형벌만 부과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8항 : 성별,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전술한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형법전」 제225-2조 및 제432-조에 규정된 차별을 선동한 사람은 이전 문단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3조 : 1명 이상의 사람이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연설, 구호 연호 또는 위협적 발언의 수단, 공공장소·대중집회에서의 판매, 배포, 발매 또는 진열된 서적, 인쇄물, 소묘, 판화, 회화 작품, 표장, 이미지 또는 그 밖의 문자·음성·영상 매체의 수단,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현수막 또는 게시물의 수단 및 전자적 방식의 공중통신 수단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여 이 선동의 효력을 발생한 경우 해당인은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92)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의 2 : 1945년 8월 8일 런던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의 정의에 따른 하나 이상의 반인도적 범죄의 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헌장 제9조에 따라 선언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프랑스 또는 국제 법원에서 이러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저질렀던 해당 범죄 사실을 제23조에서 열거한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부정하는 경우, 해당인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 제1문단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집단 살해 범죄와 1998년 7월 18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와 「형법전」 제211-1조부터 제212-3조, 제224-1A부터 제224-1C조

- iii) 집단 살해 범죄, ii)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또는 노동력 착취 범죄 및 전쟁범죄를 극단적으로 부인, 축소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드는 것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의2)
- iv) 출신 또는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그리고 성,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게 대한 모욕(‘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33조 제3항, 제33조 제4항⁹³⁾)
- v) 성희롱(‘형법전’(code pénal) 제222-33조⁹⁴⁾)
- vi) 미성년자 포르노 영상 또는 묘사의 전송(‘형법전’(code pénal) 제227-23조⁹⁵⁾)

및 제461-1조부터 제461-31조까지에 정의한 그 밖의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또는 노동력 착취 범죄 및 전쟁 범죄의 사실을 제23조에서 열거한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드는 사람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4조의2에 대한 자세한 설명, 관련 프랑스 헌법 재판소의 결정, 학계의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한동훈, 프랑스의 역사기억법에 대한 헌법적 분석, 헌법재판연구원, 2021, 47-59 참조.

- 93)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3항 : 그 출신이나 소속을 이유로 삼거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술한 같은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한 사람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4항 : 성별,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전술한 같은 조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한 사람은 이전 문단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 94) ‘형법전’(code pénal) “제222-33조 : I. 성희롱은 상스럽거나 치욕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위압적, 적대적 또는 모욕적 상황을 유발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발언 또는 행동을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
 II. 그 행위가 반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원하는 성적인 행위를 얻고자 실질적 또는 명백한 목적 아래 상대방에게 심한 중압감을 주는 모든 형태의 행위는 성희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III. 제I항 및 제II항에서 명시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의 징역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행위인 경우
 2.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인 경우
 3. 범인이 피해자의 나이, 질명, 심신미약,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한 특정 취약성을 명확히 알고 있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 경우
 4.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한 취약성 또는 의존성을 명확히 알고 있거나 인지한 범인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
 5. 정범 또는 공범 역할의 여러 사람이 저지른 행위인 경우 ...”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 95) ‘형법전’ “제227-23조 :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영상 또는 묘사가 음란물 성격을 띠는 때에는 배포를 목적으로 이를 촬영, 녹화 또는 전달한 사람은 5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 vii) 테러행위에 대한 직접적 선동 및 옹호(‘형법전’(code pénal) 제421-2-5조⁹⁶⁾)
- viii) 미성년자가 보거나 식별할 수 있는 포르노 메시지의 배포(‘형법전’(code pénal) 제 227-24조⁹⁷⁾).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 I 제2항은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이 데크레에서 정하는 일정한 단계를 초과하는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업자는 신고 후에 본조 I의 제 1항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본조 I의 제1항에서 규정한 콘텐츠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영상 또는 묘사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범행이 미성년자의 영상물 또는 묘사물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제공, 사용 또는 배포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람은 7년의 징역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적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볼 수 있는 온라인통신서비스를 상습적으로 또는 유로로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영상물 또는 묘사물을 소지하는 사람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의 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사람은 10년의 징역 및 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에 해당하는 경죄 미수범도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조의 규정은 미성년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음란물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이미지의 촬영 또는 녹화당시에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예외로 한다.”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프랑스 형법 제227-23조는 미성년자가 포르노적 표현물의 행위자로 나타나는 경우 즉 소년성애도착적인 그림이나 내용의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209-218면.

96) ‘형법전’ “제421-2-5조 : 테러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행위는 5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97) ‘형법전’ “제227-24조 : 폭력적 또는 음란물 성격을 띠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가 신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임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매체로든 제작, 전달, 배포하거나 이러한 메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3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인쇄매체 또는 방송매체 또는 온라인 통신을 사용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매체 보도 책임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프랑스 형법전 제227-24조는 포르노적인 성격의 메시지를 미성년자가 접근 또는 수령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자 폭력적 성격 또는 인간존엄성 침해적인 메시지의 제작, 전달, 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202-209면, 219면.

그 외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 I 제3항은 24시간이라는 기간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를 사업자가 접수한 이후부터 된다는 점을 제4항은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5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제5항은 제6-2조 I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의 고의성은 사업자가 신고된 내용에 대한 비례적이고,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⁹⁹⁾

라. 인터넷상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의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상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4조¹⁰⁰⁾ 및 제5조¹⁰¹⁾는 외국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에게 프랑스 내에 대표자를 지정할 의무,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신고 메커니즘을 제공할 의무, 투명성 의무 등 절차적 의무를 부여하였다.

마. 인터넷상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새로운 권한 부여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인터넷상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권한을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가 아닌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게

98) 따라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1의 경우와 달리 금고형에 대한 규정은 없다.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2.

99) 제6-2조 II는 불법 콘텐츠가 제거되었다는 메시지를 게시해야 할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제6-2조 IV는 여러 결사에게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며, 제6-2조 V는 신고의 남용에 대처하고 있다.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pp. 3-6.

100)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4조는 사업자가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채택한 의결(délibération)에 따른 의무(1°), 프랑스 내의 사용자들을 위해 불법적 콘텐츠를 프랑스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한 신고장치를 설치할 의무(2°)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1)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5조는 사업자에게 프랑스 내에서 본 법률 제6조의 적용에 따른 사법기관의 요구나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임무를 가진 창구의 역할을 하는 자연인을 지명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여하였다.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상원의장(Président du Sénat)에 의해 지명된 3명, 하원의장(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에 의해 지명된 3명 그리고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에 의해 지명된 3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9명의 위원 전체를 대통령이 데크레(décret)를 통해서 임명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i) 주파수의 운영과 배분, ii)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 iii)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 iv) 라디오와 공영 및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권 및 제재권(Pouvoir de sanction), v) 국립시청각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 INA)와 공영방송사의 행정위원회(Conseil d'administration)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vi)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활동 전체에 대한 권고 및 자문권(Pouvoir de recommandation et consultative) 등의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¹⁰²⁾

그런데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였다.

우선,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7조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법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결(délibération)을 채택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부여하였다.

또한 제7조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경고(mettre en demeure)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게 부여하였다. 만약 인터넷 사업자가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의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20,00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액수 또는 연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이미 제거의 대상이 된 불법 콘텐츠의 재전송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협력적 또는 기술적 수단 등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¹⁰³⁾

102) 전영,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2, 166-178면 참조.

103) 현재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디지털 시대에 문화작품에 대한

바. 봉쇄 또는 링크삭제 결정을 받은 사이트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불법 콘텐츠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을 막는 것이다. 즉 법원이 불법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 문제의 불법적 콘텐츠는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의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대해서도 새롭게 명령을 내려야 되지만, 이는 불법적 콘텐츠의 확산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8조¹⁰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봉쇄 또는 링크삭제 결정을 받은 사이트를 복사한 사이트(sites miroirs)에 대한 봉쇄를 명할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법원 결정의 효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¹⁰⁵⁾

그리고 제8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적 봉쇄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 즉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의 블랙리스트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터넷상에 불법정보를 게시한 것과 관련된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왜냐하면,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블랙리스트에 기록된 인터넷 사업자와 상업적인 관계를

접근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2021년 10월 25일 법률’(LOI n° 2021-1382 du 25 octobre 2021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에 따라 Hadopi와 결합하여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으로 통합되었다.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fTOHZByUk). ZEtTOHZByUk, 2023. 04. 12. 방문.

104)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8조 : … 제6-4조 - 기판력을 가지는 법원의 결정이 제6-2조 I의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콘텐츠가 있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적합한 일체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 … 행정기관은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자에게 … 법원의 결정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사한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하에, 행정기관은 또한 모든 검색엔진 … 등에게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5)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fTOHZByUk). ZEtTOHZByUk, 2023. 04. 12. 방문.

맺는 광고주 등은 매년 최소 1번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들 인터넷 사업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공개해야 하고, 연차보고서에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⁰⁶⁾

106) Jean-Sébastien Mariez et Laura Godfrin, Lutte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décryptage de la loi dite « Avia », 28 Mai 2020, <https://www.dalloz-actualite.fr/node/lutte-contre-contenus-haineux-sur-internet-decryptage-de-loi-dite-avia#.ZEtTOHZByUk>, 2023. 04. 12. 방문.

Ⅲ.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후의 법적 상황

1.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소권자인 상원의원들은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2항¹⁰⁷⁾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제7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 심판을 제소하였고,¹⁰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을 통해서 상원의원들의 제소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¹⁰⁹⁾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절차

107) 프랑스 헌법 제61조 “① 조직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

108)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원의원 60명이 제소권자로 등장하지 않은 점은 하원의원의 경우 상원의원보다 국민의 의사에 보다 민감하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제소를 하는 경우 중요표현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Roseline letteron, 《 La loi Avia, un désastre annoncé 》, Actualité Libertés, Hommes & Libertés, n° 191, septembre 2020, p. 15.

109) 전학선 교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아비아 법률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다. 아비아 법률안은 제1조에서 행정관청이 인터넷 운영자에게 인터넷 상에 테러나 아동포르노그라피의 내용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24시간 안에 이에 대한 삭제조치가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내용물 주소를 통지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청에 의하여 통지된 표현물에 대하여 1시간 안에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1년의 금고와 2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동포르노그라피와 테러 관련 표현물에 대한 제재는 공공질서와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표현물의 불법성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인터넷 운영자가 표현물을 삭제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비아 법률 제1조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전학선, 프랑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56면); 한편, ‘2020년 6월 18일의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과 관련하여, TECH IN France, M. Thomas HOCHMANN, La Quadrature du Net et Franciliens.net, Mme Danièle OBONO et autres députés France Insoumise, Association Wikimédia France, Syndicat de la magistrature, du Syndicat des avocats de France, de la Ligue des Droits de l’Homme et de AIDES, Association Aeon, French American Bar Association (FABA), Ligue International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LICRA)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 관점에서 위헌으로 판단을 하였지만,¹¹⁰⁾ 주된 심판대상은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1조 I와 제1조 II였다.¹¹¹⁾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제1조 I와 제1조 II를 중심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¹¹²⁾

가.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하여

1) 심판대상법률규정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은 행정기관이 온라인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 서비스제공자(hébergeurs ou aux éditeurs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en ligne)에게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일정한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주소목록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에게 고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1조를 개정하는 규정이다.

110)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제소권자의 제소가 없었음에도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1항 제2문 - “모든 수정안은 비록 간접적이더라도 제출된 또는 이송된 법률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제1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 의 요청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판시이유 26-29).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p. 1;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의 절차는 대심원칙(principe du contradictoire)을 따르지 않는다. 사전적 위헌법률심사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소송이기 때문이다.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의 개시에 있어서 제청권자의 제청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제청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반대당사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심리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동훈,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재판연구원, 2012, 41-44면 참조.

111) Charlotte Denizeau는 이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해명될 것이 기대되는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콘텐츠를 신고하는 요구자의 자격과 이와 같은 요구의 수신자의 문제, 비례성 심사에서 법률의 필요성(nécessité)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Charlotte Denizeau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여러 의견들은 프랑스 법 체계에는 이미 혐오 콘텐츠를 대처하기 위한 수 많은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체 법률규정에 대한 심사로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평가한다.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p. 212-213.

112) ‘2020년 6월 18일의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의 공식 해설서인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또한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1조 I와 제1조 II에 대한 해석만 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은 온라인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 ou aux éditeurs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en ligne)가 행정기관이 고지한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기간을 24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온라인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 ou aux éditeurs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en ligne)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판시이유 2).

2) 제소이유

이와 같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해서 제소권자인 상원의원들은 i) 새로운 독회에서 채택된 이 조항은 수정안에 대한 조건을 정한 헌법 제45조 제1항¹¹³⁾에 반한다는 점, ii)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iii) 온라인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 ou aux éditeurs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en ligne)에게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¹¹⁴⁾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3).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자

113) 프랑스 헌법 제45조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법률안 및 의원발의법률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와 제41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수정안은 비록 간접적이더라도 제출된 또는 이송된 법률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제1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아직 토의가 진행 중인 법규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수정안을 제1독회 후에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114)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3조는 “경찰력의 유지와 행정지출을 위하여 공공의 조세가 필요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는 i) 조세 앞의 평등, ii) 희생, 특별한 구속 등에 있어서의 평등이 포함된다고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Dominique Rousseau,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13, pp. 484-486.

유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현재의 통신수단의 상태에서 그리고 일반화된 온라인 대중 통신서비스의 발달 및 민주주의적 생활에 대한 참여 및 사상과 견해의 표현을 위한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의 권리는 이와 같은 온라인 통신서비스에 접근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의미한다(판시이유 4). 》 고 판시하였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보다 고전적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입법자의 권한과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자의 권한 행사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헌법 제34조는 “법률은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적 권리 및 기본적 보장 …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자유로운 통신의 권리 및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하는 자유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이와 같은 자격에서 입법자는 또한 공적 질서 및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조건 중의 하나이며, 다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 중의 하나인 만큼 더욱더 소중하다. 따라서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에 가해지는 제한은 추구하는 목적에 필요하고, 적합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판시이유 5). 》 고 원칙적인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포르노 영상의 전파와 테러행위에 대한 선동 또는 옹호는 공적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남용이다.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통신서비스의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이와 같은 콘텐츠의 제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남용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판시이유 6). 》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적합하지 않고, 필

요하지 않고, 그리고 과도한 제한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우선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성의 결정이 해당 콘텐츠의 명백한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한다고 보았다. 심판대상법률은 불법적 성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로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행정기관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충분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르도록 주어진 1시간은 행정기관의 요구의 적법성을 다룰 수도 없게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판시이유 7).¹¹⁵⁾

따라서 이와 같은 판시이유에 근거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법률 제1조 I가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¹¹⁶⁾

나.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에 대하여

1) 심판대상법률규정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에게 혐오적 또는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2조를 신설하는 규정이다(판시이유 10).¹¹⁷⁾

115) “판시이유 7. 그렇지만, 우선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의 결정이 이들 콘텐츠의 명백한 특징에 근거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제거요구에 대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제거요구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온라인 통신서비스 호스트 또는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데 부여된 1시간이라는 기간은 강제로 이들 콘텐츠를 제거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온라인 통신서비스 호스트 또는 편집자는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6)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pp. 14-16.

117)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판시이유 12.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가 적용되는 경우, 데크레(*décret*)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가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가 열거하는 조항에 명백하게 속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콘텐츠

2) 제소이유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에 대해 제소권자인 상원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제소이유를 주장하였다.

첫째로, 상원의원들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적 또는 불법적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소권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콘텐츠의 전파를 방지 및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를 통한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상원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의 콘텐츠를 제거하는 데 부여된 시간이 짧다는 점과 이들 사업자들이 문제의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적인지 여부를 자신이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문제의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이들 사업자들을 조장한다는 점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상원의원들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가 새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원의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적 및 성적인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여러 형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 필요성 원칙(*principe de nécessité des peines*)¹¹⁸⁾ 및 형법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loi pénale*)¹¹⁹⁾

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옹호하는 범죄,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또한 이들의 성,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범죄, ... 1945년 8월 8일의 런던협정에 부속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약(*statut*) 제6조에 규정되고, 동 규약 제9조의 적용에 따라 범죄조직으로 선언된 조직의 구성원 또는 프랑스 또는 국제 법원에 의해 이와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범죄, 집단학살 범죄, 앞에서 언급한 반인도적 범죄 이외의 다른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또는 노예화된 사람에 대한 착취범죄, 또는 프랑스 또는 국제법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전쟁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과도하게 부인, 축소 또는 일반화(*banalisation*)하는 범죄, 그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욕하는 범죄 또는 성,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욕하는 범죄, 성희롱 범죄, 미성년자의 영상 또는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것이 포르노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와 같은 영상 또는 표현물의 전달범죄, 테러행위의 직접적 선동 또는 테러행위의 옹호범죄, 미성년자가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포르노 성격을 가지는 메시지의 배포범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118)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5조와 제8조에 근거한 형벌 필요성 원칙(*principe de nécessité des*

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11).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와 같은 제소권자인 상원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관점에서만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를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우선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를 가결함으로써, 입법자는 공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동을 찬양하는 발언이 배포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적 질서 및 타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판시이유 13).》라고 판시함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함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를 통한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적합하고, 비례적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분,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위치 및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와 같은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eines)은 범죄와 형벌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점, 판사가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용되는 형벌을 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즉 형벌 개별화 원칙)을 의미한다. 한동훈,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헌법적 의미, 헌법재판연구원, 2014, 55-56면.

- 119) 프랑스 헌법상 평등원칙은 무한하게 하위의 세부원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층적 원칙”(principe-gigogne)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따라 평등원칙은 크게 i) 법률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loi), ii)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앞의 평등원칙의 내용으로는 재판조건의 평등, 법정 및 소송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 형법 앞의 평등, 공직 앞의 평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Dominique Rousseau,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13, pp. 482-486).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 -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보호하든지, 처벌하든지, 만민에 대해서 동일해야 한다.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누구나 그의 능력에 따라서 공적인 고위직, 지위, 직무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 - 에서 입법자가 성격이 상이한 행위들 간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법 앞의 평등원칙(principe d'égalité devant la loi pénale)을 도출하였다(Dominique Rousseau/Pierre-Yves Gahdoun/Juïen Bonnet,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20, p. 920).

즉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단순한 신고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와 관련된 어떤 여과절차도 없으며,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고자의 확신 이외에 다른 조건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의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상당한 수의 신고를 접수받아야 하며, 형사적 제재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신고된 모든 콘텐츠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판시이유 14).

그런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사의 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입법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만이 제거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는 콘텐츠의 제거를 정당화하는 여러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사항도 같이 규정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이유에 국한되지 않고,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하는 전체 불법적 콘텐츠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된 콘텐츠를 심판대상규정에서 규정하는 전체 범죄의 관점에서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범죄들 중 일부는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표현 또는 배포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판시이유 13).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24시간 내에 불법적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한 점은 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의무를 보다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어려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24시간이라는 기간은 특히 짧다(판시이유 16).》고 판시하였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4시간 내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입법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의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입법자가 새로운 제6-2조 I의 마지막 항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범죄의 고의(caractère intentionnel)는 …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필요하고, 비례적인 심사가 없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을 두고자 하였지만, 채택된 법문을 통해서 그 명확한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판시이유 17). 》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지 않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반복성에 대한 고려없이, 형사적 제재가 부과된다(판시이유 18). 》 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기간 내에 신고된 콘텐츠의 명백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첫 번째 의무위반의 경우 적용되는 형벌 및 특별한 책임면제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단지 신고받은 콘텐츠를 그 명백한 불법성과 무관하게 제거하게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에 대한 필요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을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제소이유를 검토할 필요 없이,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는 헌법에 반한다(판시이유 19). 》 고 하였다.¹²⁰⁾

다. 기타 심판대상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대하여

심판대상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¹²¹⁾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제소권자인 상원의원들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제소이유를 따로 검토하지 않고,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심판대상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 모두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판시이유 22-25).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포된 법률에는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VI장 인터넷상 증오유발 콘텐츠 유포 예방’과 온라인 혐오감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제16조만 남게 된다.¹²²⁾

120)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pp. 16-19.

121) 심판대상법률 제18조 “제1조, 제4, 제5조, 제7조의 I, II, III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7조의 IV 3°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22) 최종적으로 공포된 법률에는 ‘인터넷상 혐오 콘텐츠를 금지하기 위한 2020년 6월 24일 법률’의 중심적 규정은 대부분 삭제되었으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VI장 인터넷상 증

2.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2020년 6월 18일 결정’에 대한 평가

가.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의 의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해서 프랑스 학계는 ‘마른하늘의 날벼락(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clair)이 아닌, 폭풍우 속의 천둥’(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사형될 운명인’(vouée à la peine de mort), ‘완전히 사지절단된’(totalement démembrée), ‘공중분해’(explosé en vol), ‘사산’(mort-née), ‘예견된 재난’(désastre annoncé)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¹²³⁾

따라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의 의견과 프랑스 내의 입법절차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검열금지 원칙에 따라 사전적 제한이 아닌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체제(régime répressif)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은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¹²⁴⁾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표현할 자유”(liberté de s'exprimer)를 규정함으로써 인

오유발 콘텐츠 유포 예방’과 온라인 혐오감시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 “온라인혐오감시센터는 이 법률 제1조에 언급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현상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한다. 이 기구는 통신사업자 및 해당 위법행위의 예방·방지에 관한 유관 단체, 행정관청, 연구자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대중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이 기구는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기구의 구성과 업무는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의 규정 정도만 남게 된다(국회도서관,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1), 2020). 현재 온라인 혐오감시센터는 법개정으로 Arcom 산하에 있다(<https://www.arcom.fr/nos-missions/regulation-des-plateformes-en-ligne-et-reseaux-sociaux/observatoire-de-la-haine-en-ligne-analyser-pour-mieux-lutter>, 2023. 05. 01. 방문).

123)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p. 208-209.

124) Roseline letteron, 《 La loi Avia, un désastre annoncé 》, Actualité Libertés, Hommes & Libertés, n° 191, septembre 2020, p. 15;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 일정한 표현 - 예를 들면 음란표현 - 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적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연구원, 2016, 32-43면.

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원래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 “제11조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은 표현의 수신자(récepteur)가 아닌 표현의 발신자(émetteur)만을 염두에 두었다.¹²⁵⁾ 그런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자유 이외에 특히 사회연결망에서 “표현할 자유”(liberté de s’y exprimer)를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였다.¹²⁶⁾

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의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제정의 목적인 인터넷상 테러나 아동 포르노 등 불법정보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입법목적은 인정했지만, 입법자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특수성 - 문제의 표현을 하는 사람은 확인되기 어렵다거나,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문제의 표현에 대한 반응의 순간성 및 표현의 효력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 표현된 내용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문제의 표현에 대처하기에는 사법시

125)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가 내포하는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전달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는 본래 주관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상과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의 이해는 또한 1789년 인권선언 제정자들이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전달(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donc”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789년 인권선언 제정자들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귀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자유이다. 따라서 여기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제한이 아닌, 사후적 제한에 해당하는 형벌체계(régime répressif)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형사분야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principe de légalité des délits et des peines)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 및 그 남용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법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Jean Morange, 《La protection constitutionnelle et civile de la liberté d’expression》,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Vol. 42 N°2, Avril-juin 1990, p. 773.

126) Lucien Castex/Karine Favro/Célia Zolynski, La lutte contre la haine en ligne : de l’appel du 18 juin au discours de la méthode, Recueil Dalloz, 2021, 05, p.248.

스탬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 을 인정하지 않았다.¹²⁷⁾¹²⁸⁾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 학계의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하여

우선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콘텐츠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행정기관만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사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전통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 판단된다.¹²⁹⁾

나아가 심판대상법률 제1조 I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011년에 포르노적 성격을 가지는 미성년자의 이미지나 표현의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어, 2014년에는 테러행위에 대한 선동 및 옹호로 그 콘텐츠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행정적 봉쇄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³⁰⁾

2)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와 관련하여

그리고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II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대한 전체적 평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근거한 논거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한다.¹³¹⁾

127) Emmanuel Dreyer, La censure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 384, Juillet-Août 2020, pp. 412-413.

128)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mmanuel Dreyer, *La censure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 384, Juillet-Août 2020, p. 413.

129)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4.

130)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5.

131)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근거한 논거 이전에 ‘혐오 콘텐츠’(contenu haineux)의 개념 자체와 법률의 기본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또한 존재한다. 즉 Roseline Letteron 교수는 법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혐오와 같은 감정을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

첫째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판시이유 16에서 신고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내에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히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행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¹³²⁾

그런데 기술적 및 인적 수단의 충분성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제적 차원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부터 통신전문가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협력을 통해서 불법적 콘텐츠의 삭제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³³⁾

둘째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단지 신고받은 콘텐츠를 그 명백한 불법성과 무관하게 제거하게만 함으로써 과도한 검열(surcensure)의 위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 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은 단지 임시적이며, 당사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이며, ii) 여기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간략한 심사를 통해서 제거 등을 구하는 신고가 명백히 근거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iii)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부적합한 또는 과도한 사용의 경우를 상정하는 가정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법을 실천한다는 확

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혐오표현의 제거요구를 자신의 신분만을 제시하는 어떤 사람이 제기하고, 표현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검열은 다른 사인에 의해 실행되며, 불행한 검열의 희생자는 이와 같은 일종의 검열을 자신의 표현이 이미 사라진 다음에야 다룰 수 있기 구조라고 비판한다. Roseline Letterson, 《 La loi Avia, un désastre annoncé 》, Actualité Libertés, Hommes & Libertés, n° 191, septembre 2020, pp. 16-17.

132)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중소 규모의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직원을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된다.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6.

133)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7; Emmanuel Dreyer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플랫폼이 정보흐름의 관리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mmanuel Dreyer, La censure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 384, Juillet-Août 2020, pp. 416.

증 또한 없으며,¹³⁴⁾ iv) 거대 플랫폼은 불법정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의한 제한 및 통제를 사후적으로 받기 때문에 과도한 검열의 위험은 과장된 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¹³⁵⁾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 이후의 법적 상황

가. 의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중요 조항 전부가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며, 위헌으로 선고된 조항을 제외한 채로 공포되게 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적 상황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넷상의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 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에게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의 제거나 봉쇄를 명하고, 이들 인터넷 사업자는 1시간 내에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시도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으로 좌절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24시간 내에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를 제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¹³⁶⁾

134) Charlotte Denizeau,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p. 217.

135) Emmanuel Dreyer, La censure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égipresse, n° 384, Juillet-Août 2020, p. 417.

136)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1조는 2021년 8월 24일 법률(LOI

다. 인터넷상의 혐오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에 제6-2조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엔진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이용자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이들 인터넷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이들 불법정보를 제거 및 봉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였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으로 이와 같은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명백한 혐오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LOI n° 2021-1109 du 24 août 2021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¹³⁷⁾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프랑스의 법질서에 등장하게 된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 제42조는 아동포르노 및 테러 이외의 인터넷상의 혐오 또는 불법 콘텐츠의 규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n°2021-1109 du 24 août 2021)과 2021년 10월 25일 법률(LOI n°2021-1382 du 25 octobre 2021)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전 421-2-5조에서 규정하는 테러행위를 선동하는 것 또는 테러행위를 옹호하는 것에 대처할 필요성 또는 형법전 제227-23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영상 또는 묘사의 배포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률 제6조III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 또는 본 법률 제6조 I의 2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에게 형법전 421-2-5조 및 형법전 제227-23조에 반하는 모든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동시에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한다.

24시간 내에 형법전 421-2-5조 및 형법전 제227-23조에 반하는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형법전 421-2-5조 및 형법전 제227-23조를 위반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전자주소목록을 통지할 수 있다. 본 법률 제6조 I의 1에서 규정한 사람은 지체없이 이 전자주소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 그렇지만, 본 법률 제6조의 III에서 규정한 사람이 제6조의 III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본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보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고, 본 항 제1문에서 규정한 고지를 진행할 수 있다. ...”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801164>.

137) 프랑스 내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LOI n° 2021-1109 du 24 août 2021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은 제1장 공화국의 원칙 및 사회생활의 최소한의 요청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제1조에서 제6조), 제2장 신앙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제68조에서 제88조), 제3장 기타 규정(제89조에서 제90조), 제4장 해외령에 관한 규정(제91조에서 제103조)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상의 혐오 및 불법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36조에서 제48조에 숨어 있다.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964778/>, 2023. 05. 02. 방문.

품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다.¹³⁸⁾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서 신고된 콘텐츠의 명백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배포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과 같이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콘텐츠의 불법성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24시 내에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판시이유 14에서 19)로 불법 콘텐츠의 제거의무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입법자는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수용하여,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을 통해 24시간이라는 기간에 관한 부분과 형사적 제재 부분을 삭제하였다.

1) 적용대상 사업자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 제42조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¹³⁹⁾의 적용범위는 ‘인터넷상 혐오

138)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에 대해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지만,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소권자인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이 제소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제42조로 확대하지 않았다(Décision n° 2021-823 DC du 13 août 2021). Christophe Bigot, Les discours de haine et les contenus illicites en ligne, RFDA, 2021, § 2.

139)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I.- 분류, 링크화 또는 제3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공유에 기반하고, 프랑스 내에서 설립되었는지 무관하게,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이 테크레가 정하는 일정한 접속수를 초과하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안하는 소비법전 제L. 111-7조에 규정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본 법률 제6조 I의 7 제3항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의 공개적 배포를 막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a)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콘텐츠에 대해서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발한 명령에 따라 자신이 행하는 활동을 가능한 빨리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게 알릴 수 있는, b)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는 정보에 대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의 수령을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기관에게 요구의 결과를 알릴 수 있는, c) 자신이 콘텐츠 저장활동을 하는 경우에, 범죄와 관련하여 수색, 확인 및 소추를 위해 사법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신고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절차와 비례적인 인적 및 기술적 수단을 실천해야 한다.

2°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본 조의 적용을 위해 공공 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연인인 한명의 연락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 이 연락담당자는 특히 사법기관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부하는 요구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요구를 수령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안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이용조건을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대중이 제공한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이용조건에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불법적 콘텐츠의 게시가 금지된다는 점도 같이 제공한다. ...

표현 금지법'과 동일하게 소비법전 L. 111-7조가 규정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서, “분류, 링크화 또는 제3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공유에 기반하고, 프랑스 내에서 설립되었는지 무관하게,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이 데크레(décret)가 정하는 일정한 접속수를 초과하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안하는 자이다.”¹⁴⁰⁾

2)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는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 I의 1°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인적 및 기술적 절차와 수단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를 수령했다는 점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는 장치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게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¹⁴¹⁾¹⁴²⁾

4°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불법적 콘텐츠의 배포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단 및 채택한 조치 등에 대해서 대중에게 보고한다. ...

II. 테크레가 정하는 일정한 접속수를 초과하며,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단계보다 높은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사업자는

1° 본조 I의 제1항에서 언급한 콘텐츠의 배포,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서비스의 기능 및 사용과 관련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

2° 특히 본조 II의 1°에서 언급한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서비스의 특징, 확인된 위험의 크기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3°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정한 방법 및 주기성에 따라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III. 본조 I에서 언급된 사업자는 본조의 적용을 위해 사용된 절차 및 수단을 고등시청각 위원회에 보고한다. ...”

140) Christophe Bigot, Les discours de haine et les contenus illicites en ligne, RFDA, 2021, § 22.

141) 법률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여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본적 철학은 인터넷 이용자는 불법 콘텐츠의 제거요구에 관한 정보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져야 하며,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hristophe Bigot, Les discours de haine et les contenus illicites en ligne, RFDA, 2021, § 23.

142) 이에 반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내에 신고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판단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 I의 2°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한 명의 연락담당자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¹⁴³⁾ 및 사법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을 위한 규정이다.¹⁴⁴⁾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 I의 3°은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의 확산에 대처하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반적 사용조건을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일반적 사용조건에는 불법 콘텐츠의 온라인 게시의 금지, 불법 콘텐츠의 탐지, 식별 및 처리를 위한 자신들의 조정(modération)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의무외에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 I의 5°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¹⁴⁵⁾

3) 규제대상인 불법적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공개적 배포를 막는 데 기여해야 하는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하여 개정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4조는 “본 법률 제6조 I의 7 제3항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4항¹⁴⁶⁾의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조 I의 7 제3항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옹호, 테러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선동 및 이와 같은 선동의 옹호, 인종적 증오의 교사, 성,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143) 현재는 Arcom(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이다.

144) 또한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은 증오 콘텐츠를 배포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대한 제재절차를 설치한 점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위험에 대한 정보 및 전체적 평가와 관련하여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ristophe Bigot, Les discours de haine et les contenus illicites en ligne, RFDA, 2021, § 24.

145) https://www.arcom.fr/sites/default/files/2022-11/Lignes%20directrices%20haine%20en%20ligne_0.pdf, 2023. 07.20. 방문.

146)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33조 제3항 : 그 출신이나 소속을 이유로 삼거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술한 같은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한 사람은 1년의 징역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교사 및 아동포르노, 폭력의 교사 특히 성폭력 및 성차별적 폭력의 교사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억제와 밀접히 연결된 공익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형법전 제222-33조, 제225-4-1조¹⁴⁷⁾, 제225-5조¹⁴⁸⁾, 제225-6조¹⁴⁹⁾, 제227-23조, 제227-24조 및 제421-2-5조에 규정된 범죄의 배포에 대처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불법적 콘텐츠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선언되었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법 콘텐츠와는

147) 형법전 “제225-4-1조 I. 인신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착취할 목적으로 이들을 모집, 운송, 이전, 유숙 또는 수용하는 행위이다. 1. 피해자, 그 가족 또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협박, 강요, 폭행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이루어진 인신매매의 경우, 2. 피해자의 법률상, 사실상 또는 입양에 의한 직계존속 또는 그에 대한 보호감독권을 가지거나 직무상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경우, 3. 범인이 피해자의 나이, 질병, 심신미약,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한 특정 취약성을 명확히 알고 있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인 경우, 4. 보수 지급 또는 그 밖의 혜택을 그 대가로 제공하거나 보수 지급 또는 혜택 제공 약속을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신매매한 경우
이 제1항제1문단에 명시된 착취는 피해자를 성매매알선, 성폭행 또는 성적 침해, 노예화, 강제노역 또는 강요된 서비스, 예속화, 장기 중 하나의 적출, 구결착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동 또는 숙박 환경에 처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거나 피해자가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범인 자신 또는 신원 미상의 사람을 포함한 제3자의 처분 하에 두는 행위이다.
인신매매 죄를 범한 사람은 7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 인신매매가 제 I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인신매매죄를 구성한다.

인신매매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153-155면.

148) 형법전 “제225-5조 성매매알선은 그 주체 및 방식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성매매를 돕거나 보조하고 보호하는 행위, 2. 타인의 성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거나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성매매도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3.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 유인 또는 약취하는 행위 또는 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는 행위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사람은 7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160-161면.

149) 형법전 “제225-6조 그 주체 및 방식과는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범죄로 보며, 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25-5조의 처벌을 부과한다. 1. 성매매도자와 성착취자 또는 성매수자간 중간역할으로 하는 행위, 2. 성매매알선자의 허위 소득증빙을 도와주는 행위, 3.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성매매도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1명 이상의 성매매도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소득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4. 성매매의 위험에 처한 사람 또는 성매매도자에 대한 보호 목적의 지정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매매 예방, 단속, 지원 활동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국회도서관,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2018, 161-162면.

약간 차이가 있다. 즉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한 불법 콘텐츠로는 i) 출신 또는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그리고 성,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의 선동 또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선동(‘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5항, 제7항, 제8항), ii) 성희롱(‘형법전’ 제222-33조), iii) 미성년자 포르노 영상 또는 묘사의 전송(‘형법전’ 제227-23조), iv) 미성년자가 보거나 식별할 수 있는 포르노 메시지의 배포(‘형법전’ 제227-24조), v) 테러행위에 대한 직접적 선동 및 옹호(‘형법전’ 제421-2-5조)이다. 이에 반해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은 i) 인신매매에 관한 콘텐츠(‘형법전’ 제225-4-1조), ii) 성매매 알선에 관한 콘텐츠(‘형법전’ 제225-5조 및 제225-6조)를 불법 콘텐츠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¹⁵⁰⁾

150)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에서의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부분의 개정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 전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위헌선언된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개정 후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 : 인터넷상 테러 및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해 행정기관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24시간 내에 문제의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함.	제6-1조의 개정 : 인터넷상 테러 및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해 행정기관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1시간 내에 콘텐츠의 제거 또는 봉쇄조치를 할 것을 명함. 위반시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	제6-1조 :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24시간 내에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
	제6-2조의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검색엔진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테러 및 아동 포르노 이외의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고, 봉쇄해야 함. 위반시 250,000유로의 벌금.	제6-4조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인적 및 기술적 절차와 수단의 설치, 절차와 비례적인 인적 및 기술적 수단, 연락담당자의 설치 의무, 투명성 의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장치의 설치 의무(24시간 내에 콘텐츠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제거나 봉쇄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IV.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의 비교검토

1.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에 대한 검토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또는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의 입법으로는 종래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¹⁵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¹⁵²⁾,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¹⁵³⁾,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¹⁵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¹⁵⁵⁾가 있었다.¹⁵⁶⁾

151)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안·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1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56) 이들 법률에 대한 소개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로는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3권, 2002, 227-288면 참조.

또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율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테러를 선동 및 선전하는 표현물과 관련해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¹⁵⁷⁾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통시킨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소위 ‘n번방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¹⁵⁸⁾

따라서 아래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⁵⁹⁾

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15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8) ‘n번방 방지법’ 개정 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여야 하고, 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제44조 내지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그러나 ‘n번방 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규정이 도입되고,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신혜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 2021, 191면.

159)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성착취 촬영물 유통사건이라 할 수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발의되었고, 그 결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98면.

5160)),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22조의8¹⁶¹), 제104조 제3항 제1호의3¹⁶²))를

16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아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통방지의무의 주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즉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에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여기서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기간통신사업자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이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전기 통신 회선을 임대하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 통신 역무를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162)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회선 교환, 부호 변환, 통신 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전송, 매체 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 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란 (주) 카카오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과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이 포함된다.¹⁶³⁾

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란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i)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i)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받은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iii)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즉 P2P 서비스 또는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이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의무를 지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제2조 제14호 가목 및 저작권법 제104조).¹⁶⁴⁾

2)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

가) 유통방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가 규정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는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¹⁶⁵⁾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163)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2면.

164)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2-103면.

1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을 포함한다),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¹⁶⁶⁾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¹⁶⁷⁾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다.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내지 편집물 등, 이른바 성착취 촬영물만이 유통방지의무의 대상이다.¹⁶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68)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4면.

나)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의무

부가통신사업자는 성착취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제22조의5 제1항). 즉 부가통신사업자는 어떠한 경로이든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인지하였으면 즉각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 등에 의해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도 통신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유관행정부처나 그 밖의 공익단체에 의한 요청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이해된다.¹⁶⁹⁾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 한해 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개정으로 인하여 인식의 명백성은 더 이상 유통방지의무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어떠한 게시물이 성착취 촬영물 등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인식만 있어도 유통방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¹⁷⁰⁾

169) 따라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게시물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정도만으로도 의무를 지게 하여 유통방지의무를 보다 강화하였다. 신혜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 2021, 198면.

170)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5면; 이에 대해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나 삭제요청 또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50면.

3) 기타 의무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의무 이외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22조의8¹⁷¹⁾, 제104조 제3항 제1호의3¹⁷²⁾를 부담한다.¹⁷³⁾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⁴⁾

171)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17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73) 그러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와 관련하여 그 위반시 형사처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면서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없이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66면.

174)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66-67면.

4) 유통방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유통방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방지의무위반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었으며(제92조 제1항, 제1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제104조 제3항 제1호의2).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었다. 즉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지만, 과태료가 5천만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규정(제22조의6)¹⁷⁵⁾, 사업장폐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규정(제27조)¹⁷⁶⁾이

17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76)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되었으며, 형사처벌도 강화되었다(제95조의2¹⁷⁷⁾).

이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의 1의3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의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하지 않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서규정은 정보매개서비스를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지 정보를 매개하는 자로서 관련된 정보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치의무 위반으로 일단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¹⁷⁹⁾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7)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022. 6. 10.>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8)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68면.

두도록 규정하였다(제44조의9¹⁸⁰).

1) 의무의 주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¹⁸¹)는 이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2호), 이는 기

179) 최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개정사항 및 검토는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참고.

1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²⁾

요컨대, 텔레그램을 비롯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의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¹⁸³⁾

2)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가) 불법촬영물의 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일하게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른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

182)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3면.

183)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103-104면.

속 임원이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지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44조의9 제2항).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¹⁸⁴⁾).¹⁸⁵⁾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불법촬영물 등에 있어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6조 제2항 제4호의4¹⁸⁶⁾).¹⁸⁷⁾

1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5) 그 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의 비교검토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은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아래에서는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로 나누어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관련된 국내법 법률을 비교 및 검토하고자 한다.

가. 불법정보의 범위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i) 테러나 아동포르노 콘텐츠와 일정한 범죄 실행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 콘텐츠로는 i) 출신 또는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그리고 성,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의 선동 또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선동, ii) 1945년 8월 8일 런던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에 규정되고, 같은 헌장 제9조에 따라 선언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프랑스 또는 국제 법원에서 이러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인, iii) 집단 살해 범죄, ii)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또는 노동력 착취 범죄 및 전쟁범죄를 극단적으로 부인, 축소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드는 것, iv) 출신 또는 어떤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그리고 성,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게 대한 모욕, v) 성희롱, vi) 미성년자 포르노 영상 또는 묘사의 전송 등이 있다.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¹⁸⁷⁾

187) 신혜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 2021, 194면.

따라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 및 소위 ‘혐오 표현’도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의 배경을 반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내지 편집물 등 이른바 성착취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의 경우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길게 열거한 명백한 혐오 및 불법 정보의 경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로 분류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국내의 법률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비롯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

영물 등 유통방지의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은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⁸⁸⁾

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1)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경우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하고자 하였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의 결정’에 따라 주요부분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위헌으로 판단된 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행정기관은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에게 해당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1시간 내에 문제의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1조).

그리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자세히 규정한 명백한 혐오 또는 불법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제의 콘텐츠를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이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

2) 국내의 법률

이에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188)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 제6-2조의 1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11-7조에 따르면, 검색엔진, 분류 및 링크 사이트 그리고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콘텐츠,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교환이나 공유를 목적으로 여러 당사자와 관계를 맺는 플랫폼(platformes)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Facebook, Amazon, Ebay, Leboncoin.fr, Google, Dailymotion, Instagram, Twitt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 즉 성착취 촬영물 - 에 대해 신고, 인식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서 사업자의 인식은 어떠한 게시물이 성착취 촬영물 등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소결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의 범위,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비교 및 검토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불법정보의 범위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혐오표현 및 광범위한 불법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법률안이 원래 프랑스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과 의회 내의 토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성격이 광범위한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로 변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촬영물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이들 법률의 직접적 개정배경이 ‘n번방 사건’이라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경우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따라 구분되어 규정되지만 주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된 대상이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프랑스와 우리의 법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테러 또는 아동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정보제공자(éditeurs)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hébergeurs)는 1시간 내에 문제의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외의 명백한 혐오 또는 불법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이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무 및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의무의 측면에서 프랑스와 우리의 입법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1시간 또는 24시간이라는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우리의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테러나 아동 포르노의 경우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테러나 아동 포르노라는 콘텐츠의 판단권이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 이들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확정이 논쟁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외의 불법정보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의 불법 콘텐츠를 판단하는 어려움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위반의 경우 과도한 형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우리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의 부과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폐업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¹⁸⁹⁾ 해외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서버의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외 인터넷 사업의 경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¹⁹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9)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63면.

190) 신혜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 2021, 200-202면.

V. 맺음말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내용,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프랑스 학계의 평가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와 같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근절하고자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법률안에 대한 의회토의과정에서 하원 다수파를 대표하는 정부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신속한 법률제정절차를 통해 상원의 반대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여러 국가 기관 - 국사원, 국가인권자문위원회, 상원 - 은 수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부와 하원 다수파의 힘의 과시를 통해 의회에서 통과되지만, 프랑스 국사원의 수정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안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가결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다. 우선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제거요구를 하고,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1시간 내에 제거요구를 받은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금고 및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법률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엔진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이들 인터넷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이들 인터넷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터넷 사업자의 고의는 인터넷 사업자가 신고된 내용에 대한 비례적이고,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하원 다수파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상당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불법적 성격이 명백하지 않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로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주의 관점에서 심사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24시간이라는 기간은 신고된 콘텐츠를 심사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받은 콘텐츠를 검토하지 않고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프랑스 학계는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 정에서 드러난 여러 비판적 의견과 유사하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 결론 또한 이미 예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성착취 촬영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의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n번방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검색엔진이나 플랫폼이 포함되는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제한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프랑스 헌법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별적 입법이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대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극도로 짧은 시간에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콘텐츠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표현되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복잡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이들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적 검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흥석, 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2019.
- 권형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법 제51권, 2020.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2014.
- 김민정/이동후/김수아/홍성일,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김현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 신혜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 - 유통방지의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 2021.
-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2019.
- 이동후/김민정/김수아/홍성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9.
- 이병준,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유통법연구 제8권 제1호, 2021.
- 이상경, 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2017.
- 이승선,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8.
-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이준복,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9호), 2022.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98호, 2020.

임효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표현규제’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의 탐색 - 최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2023.

전영,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2.

전학선,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을 결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정경오,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KISO 저널 제40호, 2020.

조영기,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KISO 저널 제50호, 2023.

최규환,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 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최종선,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KISO 저널 제50호, 2023.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연구원, 2020.

한동훈, 프랑스의 역사기억법에 대한 헌법적 분석, 헌법재판연구원, 2021.

한동훈,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재판연구원, 2012.

한동훈,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9.

한위수,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30권, 2019.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2020.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헌법재판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5권, 2014.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사이버커

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2007.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 해외문헌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SUR LA PROPOSITION DE LOI,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n° 1785), 2019.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 LECTURE, SUR LA PROPOSITION DE LOI, MODIFIÉE PAR LE SÉNAT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n° 2534), 2020.

Basile Ader/Laetitia Avia, Proposition de la Avia, loi de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vers une pré-responsabilité éditoriale des plateformes,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Bertrand, Brunessen/Sirinelli, Jean, «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a liberté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 la voie étroite de la lutte contre 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 », Dalloz IP/IT, octobre 2020, n° 10.

Bigot, Christophe, « Régulation des contenus de haine sur Internet : retour sur le désaveu inflig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l'encontre de la loi dite «Avia" », Recueil Dalloz, 9 juillet 2020, n° 25.

Bonis, Evelyne ; Peltier, Virginie, « Chroniqu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janvier 2020 à juin 2020) », Titre VII [En ligne], octobre 2020, n° 5.

Castex, Lucien ; Favro, Karine ; Zolynski, Célia, « La lutte contre la haine en ligne

: de l'appel du 18 juin au discours de la méthode », Recueil Dalloz, 11 février 2021, n° 5.

Christophe Bigot, Les discours de haine et les contenus illicites en ligne, RFDA, 2021.

Conseil d'État,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haine sur Internet, 2019.

Denizeau, Charlotte, « La décision Avia, coup de tonnerre dans un ciel d'orage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juin 2021, n° 126.

Dominique Rousseau,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13.

Dominique Rousseau/Pierre-Yves Gahdoun/Juien Bonnet,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20.

Droin, Nathalie, « Loi Avia : une censure attendue mais paradoxalement surprenante », Actualité juridique. Pénal, septembre 2020, n° 9.

Emmanuel Dreyer, Présentation de la proposition de la Avia, Légipresse – Hors série #63, 2020-1.

Francis Donnat, Contenus illicites sur Internet et hébergeurs, Nouveaux Cahiers du Conseil constitutionnel n.52, juin 2016.

Jean Morange, « La protection constitutionnelle et civile de la liberté d'expression »,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Vol. 42 N°2, Avril-juin 1990.

Piazzon, Thomas, « Chronique de droit privé (janvier 2020 à juin 2020) », Titre VII [En ligne], octobre 2020, n° 5.

Quéméner, Myriam, « La haine sur Internet. Commentaire de la décision de censu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 La Gazette du Palais, 7 juillet 2020, n° 25.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1) chargée de proposer un texte sur les dispositions restant en discussion de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2020.

Safi, Farah, « La loi dite »Avia« est morte... pourvu qu'elle le reste ! », Droit pénal, septembre 2020, n° 9.

SÉNAT, Rapport n° 197 (2019-2020) de M. Christophe-André FRASSA,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2019.
SÉNAT, Rapport n° 299 (2019-2020) de M. Christophe-André FRASSA,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2020.

3. 인터넷 주소

<https://www.legifrance.gouv.fr>

<https://www.dalloz-actualite.fr>

<https://www.cncdh.fr>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

<https://www.conseil-etat.fr/>

<http://libertescherries.blogspot.com>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3年 9月 8日 印刷

2023年 9月 14日 發行

발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02.6948.9650)

<비매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